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화 : 490-3315~9



제1596호 2009. 12. 1.

고 시

제2009-56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 폐기 고시 2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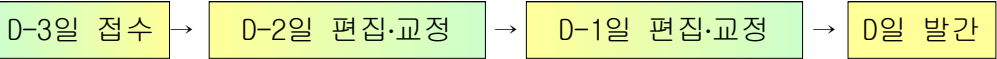
제2009-93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

인사발령

행정직 8급 공무원 휴직연장(육아) 9
 행정직 9급 공무원 의원면직 9
 일반직 9급 공무원 정규임용 10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공 람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시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09-56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 폐기 고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중 망실된 기준점의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중 랑 구 청 장

| 명 칭 | 관리번호 | 평면직각중횡선수치 | | 위 치(소재지) | 설치년월일 |
|-------|------|-----------|-----------|------------|------------|
| | | 종선 | 횡선 | | |
| 지적도근점 | 1069 | 453122.91 | 207659.75 | 면목동 634-16 | 1991.09.25 |
| 지적도근점 | 1240 | 452742.78 | 207173.08 | 면목동 340-56 | 1997.07.23 |
| 지적도근점 | 1363 | 453101.45 | 207730.99 | 면목동 617-1 | 2000.08.18 |
| 지적도근점 | 1368 | 452923.60 | 207756.89 | 면목동 619-31 | 2000.08.18 |
| 지적도근점 | 1375 | 452870.55 | 207806.24 | 면목동 582-15 | 2000.08.18 |
| 지적도근점 | 1452 | 453621.97 | 208077.94 | 면목동 63-49 | 2005.07.06 |
| 지적도근점 | 1485 | 452960.21 | 207722.35 | 면목동 623-1 | 2009.03.26 |
| 지적도근점 | 1486 | 452995.32 | 207686.01 | 면목동 624-1 | 2009.03.26 |
| 지적도근점 | 2021 | 454618.18 | 207673.62 | 상봉동 105-29 | 1993.11.17 |
| 지적도근점 | 2098 | 454599.87 | 207029.87 | 상봉동 120-13 | 1996.10.14 |
| 지적도근점 | 2108 | 454634.08 | 207545.19 | 상봉동 107-6 | 1997.08.25 |
| 지적도근점 | 2134 | 454620.42 | 206667.98 | 상봉동 129-3 | 2005.07.06 |
| 지적도근점 | 2142 | 454556.03 | 207087.17 | 상봉동 122-83 | 2003.08.08 |
| 지적도근점 | 2143 | 454587.01 | 207179.77 | 상봉동 121-72 | 2003.08.08 |
| 지적도근점 | 2144 | 454623.32 | 207291.31 | 상봉동 111-82 | 2003.08.08 |

| 명 칭 | 관리번호 | 평면직각중횡선수치 | | 위 치(소재지) | 설치년월일 |
|-----------|-----------------|-----------|-----------|------------|------------|
| | | 종선 | 횡선 | | |
| 지적도근점 | 2145 | 454686.74 | 207273.81 | 상봉동 112-50 | 2003.08.11 |
| 지적도근점 | 2148 | 454625.37 | 206813.16 | 상봉동 129-26 | 2005.07.06 |
| 지적도근점 | 2149 | 454573.88 | 206786.93 | 상봉동 129-42 | 2005.07.06 |
| 지적도근점 | 2150 | 454545.75 | 206695.09 | 상봉동 130-5 | 2005.07.06 |
| 지적도근점 | 2151 | 454566.97 | 206502.30 | 상봉동 130-3 | 2005.07.06 |
| 지적도근점 | 2152 | 454490.36 | 206528.88 | 상봉동 130-87 | 2005.07.06 |
| 지적도근점 | 2155 | 454999.01 | 207822.67 | 상봉동 106-3 | 2006.08.02 |
| 지적도근점 | 3007 | 455777.12 | 206750.22 | 중화동 307-63 | 1988.10.06 |
| 지적도근점 | 3118 | 455250.89 | 206971.07 | 중화동 301-1 | 1996.10.14 |
| 지적도근점 | 3144 | 454952.95 | 206607.68 | 중화동 320-1 | 2004.07.21 |
| 지적도근점 | 5047 | 455014.26 | 208777.84 | 망우동 465-1 | 1991.09.25 |
| 지적도근점 | 5049 | 454886.58 | 208789.87 | 망우동 403-44 | 1994.10.07 |
| 기 준 원 점 명 | 중부원점 | | | | |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일대(27점) | | | | |
| 성과폐기연월일 | 2009년 11월 30일 | | | | |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93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사무처리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주민들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사업 대상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자부담으로 일부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지원되는 경향을 탈피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 단지에 골고루 혜택이 지원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 로 개정한다.
- 2). 제2조 중 “단지중”를 “단지 중”으로 하며“개정일자”를 삭제 한다.
- 3). 제3조제1항 “①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을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으로 “각호에”를 “각 호”로 “단지내”를 “단지 내”로 한다.
- 4). 제3조①항의 6 ~ 16를 신설하여 “6.보안등 전기료 지원, 7. CCTV설치
및 방범시설, 8.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9. 쓰레기집하시설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교체구입비, 10. 담장개방, 11.자전거보관대
설치, 12.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13. 지상주차장 설치
14. 공부방 설치 및 보수,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신설한다.
- 5). 제3조②항 중 “의한”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시행·착공한”를
“시행.착공한”으로 “위한”을 “위하여”로 “득한”를 “받은”으로
“신청시”를 “신청 시”로 “과대계상을” “과대 계상”으로 띄워쓴다.
- 6). 제4조 중“수립·시행”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로 한다.
- 7). 제5조 중 “의한”를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한다.
- 8). 제6조 중 “①구청장”을 “① 구청장”으로 “의한”를 “따른“으로 ”서울특별
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을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지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②제1항”을 “② 제1항”으로 “규정에 의한”을 “따라“로 ”1월
“을 ”1개월“으로 ”③구청장“을 ”③ 구청장“으로 ”규정에 의한“을 ”
따라“로 ”취소결과“를 ”취소 결과“로 개정한다.
- 9). 제7조 중 “①구청장”을 “①구청장”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②관리주체”을 “② 관리주체”로
“폐지하고자”를 “폐지 하고자”로 개정일자 삭제한다.
- 10). 제8조 중 “①구청장”을 “① 구청장”으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12인
이하의“를 ”16명 이내의“로 ”②위원장“을 ”② 위원장“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어느하나에”로 개정일자는 삭제하며, “ 자치행정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을 신설하며 “③위촉직”을 “③ 위촉직”으로
개정한다.

- 11). 제9조 중 “다음 사항을” “다음 각 호의”로 “수립·시행에”를 “수립·시행”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개정한다.
- 12). 제10조 중 “①위원장”을 “① 위원장”으로 “②부위원장은”을 “② 부위원장”으로 “③위원회”을 “③ 위원회”로 “④위원회”를 “④ 위원회”로 개정한다.
- 13). 제11조 중 “①위원장”을 “① 위원장”으로 “②위원회”를 “② 위원회로 “③위원회”를 “③ 위원회”로 “당해”를 “해당”으로 “단지내”를 “단지 내”로 “④위원회”를 “④ 위원회”로 개정한다.
- 14). 제12조 중 “위원중”을 “위원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을 삭제하며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 15). 제13조 중 “①지원이”를 “① 지원이”로 “기타”를 “그 밖에”로 “1월 이내에”를 “1개월 이내에”로 개정날짜를 삭제하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②관리주체는”를 “② 관리주체는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③구청장 “을 ”③ 구청장“으로 ”④구청장“을 ”④ 구청장“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제외 할”을 “제외할”로 띄워 쓴다.
- 16). 제15조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와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1]공동주택 보조금 기준

| 개 정 안 | | |
|----------------------------|---------------|-----------------------|
| [별표1]공동주택 보조금 기준(총 사업비 관련) | | |
| 총 사업비 및 지원시설 | 보조비율 | 비 고 (보조비율 상한기준) |
| 5천만원 미만 | 총 사업비의 85% 이하 | 4천2백5십만원 미만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총 사업비의 80% 이하 | 4천만원 ~ 8천만원 미만 |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총 사업비의 75% 이하 | 7천5백만원 ~ 1억5천만원 미만 |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1억4천만원 ~ 2억1천만원 미만 |
| 3억원 이상 | 총 사업비의 65% 이하 | 1억9천5백만원 이상 |

[비고1] 공동주택지원시설 중 경로당 보수 및 어린이 놀이터 지원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개 정 안 | | | | | |
|-------------------|--------|-------|------|------|-----|
|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 | | | | | |
| 신청자 | 공동 주택명 | | 동 수 | | |
| | 주 소 | | 세대수 | | |
| 신 청 내 용 | | | | | |
| 구 분 | 개 요 | 소요 예산 | | | 비 고 |
| | | 총예산 | 자체예산 | 보조예산 | |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의 <u>따라</u>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u>신청인</u> (서명 또는 인)</p> <p><u>중랑구청장 귀하</u></p> | | | | |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법인,단체,개인)은 2009년 12월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참조:주택과장. 전화(02)490-3380, fax(02)490-3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중랑구홈페이지(<http://:jungnang.seoul.kr>) 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중랑구 주택과(전화)(02)490-3380, FAX(02)490-3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행정직 8급 공무원 휴직연장(육아)

2009. 11. 30.

중랑구청장

| 연번 | 성명 | 발령내용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박선희 | 복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09.11.30.~2010.12.31.) | 면목제2동 | 지방행정 서기 |

행정직 9급 공무원 의원면직

2009. 11. 30.

중랑구청장

| 연번 | 성명 | 발령내용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김낙현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중화제2동 | 지방행정 서기보 |

일반직 9급 공무원 정규임용

2009. 12. 1.

중랑구청장

| 연번 | 성명 | 발령내용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신세화 |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면목제3·8동 근무를 명함 | 면목제3·8동 | 지방행정서기보시보 |
| 2 | 조성희 |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면목제5동 근무를 명함 | 면목제5동 | 지방행정서기보시보 |
| 3 | 김철승 |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상봉제1동 근무를 명함 | 상봉제1동 | 지방행정서기보시보 |
| 4 | 이호정 |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중화제1동 근무를 명함 | 중화제1동 | 지방행정서기보시보 |
| 5 | 조성은 |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목제1동 근무를 명함 | 목제1동 | 지방행정서기보시보 |
| 6 | 장연주 |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목제2동 근무를 명함 | 목제2동 | 지방행정서기보시보 |
| 7 | 장루미 |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망우본동 근무를 명함 | 망우본동 | 지방행정서기보시보 |
| 8 | 이나라 |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신내제1동 근무를 명함 | 신내제1동 | 지방행정서기보시보 |
| 9 | 박경미 | 지방세무서기보에 임함 재정경제국 세무1과 근무를 명함 | 재정경제국 세무1과 | 지방세무서기보시보 |
| 10 | 송유빈 | 지방세무서기보에 임함 재정경제국 세무2과 근무를 명함 | 재정경제국 세무2과 | 지방세무서기보시보 |
| 11 | 강민정 | 지방사회복지서기보에 임함 망우제3동 근무를 명함 | 망우제3동 |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